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법인세법 ·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대통령령 제28640호(2018.2.13.), 제28637호(2018.2.13.)로 각각 공포된 「법인세법시행령」 · 「소득세법시행령」 일부개정 내용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3. 본 내용은 우리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자료실 법령 제 · 개정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령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불임 : 「법인세법시행령」 · 「소득세법시행령」 일부개정 내용(발체)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: 서울지역 234여개 회원사

기획실
관리팀

팀장 김진석

상무 성정현

이사장 최장순

시행 서자대조18-270 (2018.02.13) 접수 - ()

우 0670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(방배동, 프린스효령빌딩 2층) / www.scra.or.kr

전화 (02) 525-9076 전송 (02) 525-9063 / kjs@scra.or.kr / 공개

[붙임]

「법인세법시행령」 일부개정 내용(발췌)

1. 개정이유

-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2. 주요내용

○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(제50조의2)

- 1)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운행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 및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.
- 2)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.

3. 신·구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
제50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) ① ~ ③ (생략)	제50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	④----- ----- -----.
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	1.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----- -----

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“업무 전용자동차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----- ----- ----- ----- 가.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나.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.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. 다만,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·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⑤·⑥ (생 략)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·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	2.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 ⑤·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. 1. ----- ----- 월 수-----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,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

2. (생략) ⑧ (생략)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× 업무사용비율 × (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÷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)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차감하여 계산한다. ⑪ ~ ⑮ (생략) ⑯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	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⑧ (현행과 같음) ⑨----- 불구하고 ----- ----- (해당 ----- ÷ ----- ⑩ ----- 월수----- ----- 말하고,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-----. ⑪ ~ ⑮ (현행과 같음) ⑯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
---	---

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 신설 2016.2.12] <신 설>	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. ⑰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 신설 2016.2.12]
---	--

[부 칙]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생략>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제9조(업무용승용차의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2제4항, 같은 조 제7항제1호,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「소득세법시행령」 일부개정 내용(발췌)

1. 개정이유

-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2. 주요내용

-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(제50조의2)
 -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,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

3. 신·구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
제78조의3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) ① ~ ⑤ (생략)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·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. <u>1.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</u>	제78조의3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) ①~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. <u>1.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(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</u>

2. (생 략) ⑦ ~ ⑩ (생 략)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 신설 2016.2.17][시행일:2016.4.1] 제78조의3제5항(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)에 한정한다)[시행일:2017.1.1] 제78조의3제1항, 제78조의3제2항, 제78조의3제4항, 제78조의3제5항, 제78조의3제6항, 제78조의3제7항, 제78조의3제8항, 제78조의3제9항, 제78조의3제10항, 제78조의3제11항(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)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), 제78조의3제3항(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)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) 〈신 설〉	2. (현행과 같음) ⑦ ~ ⑩ (현행과 같음)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,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.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 신설 2016.2.17][시행일:2016.4.1] 제78조의3제5항(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)에 한정한다)[시행일:2017.1.1] 제78조의3제1항, 제78조의3제2항, 제78조의3제4항, 제78조의3제5항, 제78조의3제6항, 제78조의3제7항, 제78조의3제8항, 제78조의3제9항, 제78조의3제10항, 제78조의3제11항(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직전 과세기
---	---

	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)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), 제78조의3제3항(복식 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취 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)가 아닌 사업 자에 한정한다)
--	--

[부 칙]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생략>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
부터 적용한다.

② <생 략>

제7조(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78조의3제6항 및 제11항
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